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41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배준영·강대식·강명구

김미애 • 구자근 • 이종배

김성원 • 박성훈 • 최은석

이종욱 • 이인선 • 김용태

강승규 • 박대출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,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,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, 2023년 12월 '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'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.

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,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7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1조의2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 ① 1주택(주택,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1개만 보유한경우를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1주택"이라 한다)을 보유한 1세대(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소재 지역,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인구감소지역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.

②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세대가 2024년 1월 4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고,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
-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,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,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①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7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1조의2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
	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
	합부동산세 과세특례) ① 1주택
	(주택,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
	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
	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
	중 1개만 보유한 경우를 말하
	며, 이하 이 조에서 "1주택"이라
	한다)을 보유한 1세대(「소득세
	법」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
	<u>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4일부</u>
	<u>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「지</u>
	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
	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
	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
	주택으로서 주택 소재 지역, 주
	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1채의 주택(이하
	이 조에서 "인구감소지역주택"
	이라 한다)을 취득하는 경우에
	는 1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인
	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
	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
	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

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.
②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고,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
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.

④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,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,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